

# 「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10. 28 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8. 11.04 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8. 11.04 (화) 제1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·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보건사업과장 김인섭)

가.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을 건립함에 있어, 한약재의 품질관리확산,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1) 국내산 한약재의 품질관리 확산과,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, 위탁업체는 한약재의 구매 및 품질검사, 저장, 가공유통으로 한약재 재배농가 및 관련업체 지원과 기타 수익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.
- 2) 한약재 전문업체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, 최초 수탁자에게는 5년으로 함. 단, 재임대할 경우 3년단위로 연장 가능토록 하며,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 오염 등 부적절한 한약재의 가공, 유통과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위,변조 및 한약재의 가격 폭등, 폭락 조장을 하여서는 아니됨.
- 3) 임대료(사용료)는 연간 재산평가액의 10/1,000 이상으로 함.  
다만, 최초 민자유치사업으로 재산평가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지조성비와 민가투자법에 의한 총사업비를 재산평가 가격으로 갈음함

- 4) 평창군 및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 구매, 가공, 저장 유통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며, 지역경제 활성화와 품질관리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- 5)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재정부담능력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, 사용료 등을 관련분야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탁자를 선정 함.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진영)

가. 본 조례안은 "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"의 설치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,

나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제3항에 의거 한약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,
-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, 위탁기간은 3년 내지 5년으로 하고, 수탁자의 의무 및 수탁재산의 관리와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사용료등 비용산정기준과 기타 자료제출 및 조사에 관하여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,

다.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면,

- 안 제9조 제1항 규정을 보면 "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최초수탁자의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으로 할 수 있도록" 규정하고 있으나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 제1항을 보면 "행정재산등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위법에

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안을 찾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며,

-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,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**

**5. 심 사 결 과 : 수정의결**

**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【붙임】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. 끝.

# 평창군 한약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08년 11월 04일

제 안 자 :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수정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규정에 맞도록 관련조문을 수정하므로서 조례의 합법성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최초수탁자에 한하여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위탁기간을 2년간 자동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(안 제9조제1항)

# 평창군 한약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수정조례안

평창군 한약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

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위탁기간) ① 군수는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 
기간 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 수탁자의 경우 유통지원시설의 안정적  
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위탁만료일  
부터 2년간 그 기간을 자동연장할 수 있다.